2007년 세제개편(안)

I. 세제개편(안) 주요 내용

1.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

① 소득세 과표구간을 각각 **20%, 15%, 10%씩** 조정

* 현행 1,000만원이하 8%, 4,000만원이하 17%, 8,000만원이하 26%, 8,000만원초과 35%
→ 1,200만원이하 8%, 4,600만원이하 17%, 8,800만원이하 26%, 8,800만원초과 35%

② 교육비 및 출산·입양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

○ 초·중·고등학생의 **방과후학교 수업료, 급식비, 교과서 구입비**를 **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**

○ **자녀를 출산·입양한 당해연도**에 **200만원 추가공제**

③ **성실자영업자**에 대한 교육비·의료비 등 **특별공제 허용**

○ **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자영사업자에 한해** 근로자에만 허용되던 **교육비·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인정**

④ 소매·음식·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

○ **영세 자영업자 지원**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**인하하여 적용해오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*** **일몰 연장**

* 소매업(20% → 15%), 음식점업 및 숙박업(40% → 30%)

⑤ 등유 특별소비세율 인하 **(134원/ℓ → 90원/ℓ)**

○ 서민의 **유류비부담을 경감**하고 난방용 에너지인 **LNG와의 가격차이로 인한 소득역진성 완화**를 위해 등유세율 인하

2.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

① **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지출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개선**

○ **중소기업에만 허용하던 당기분 세액공제 방식***을 R&D 지출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**대기업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**

* 당해연도에 기업이 지출한 R&D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방식

②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해 **개성공업지구내 업체**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**임시투자세액 공제(7%) 허용**

③ **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**

○ 제조업을 영위하는 **화주기업**이 **제3자에게 물류를 위탁**하는 경우 **전년대비 증가한 위탁물류비의 3%**를 **세액공제**

④ **해외자원개발사업**에 투자시 **투자금액의 3%를 세액공제**

⑤ **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**

○ 대학이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유중인 토지·건물을 양도하고 **대체자산을 취득**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**과세이연**을 허용하고

○ **대학이 설립한 기업**이 수익사업을 통해 창출한 **사업소득을 대학에 출연**하는 경우 **전액 손금산입 허용**

⑥ **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**

○ **1억원 한도의**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**2억원**과 **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%**(한도 : 30억원) **중 큰 금액**으로 공제

* 10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가업상속재산 10%이상 처분, 종업원 고용 10% 이상 축소 등의 사유발생시 전액 추징

○ **중소기업** 가업상속의 경우 **거치기간을 신설**하여 상속세 **분납허용**

⑦ **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**

○ **기업과세제도 선진화** 및 **인적회사**에 대한 **이중과세 해소**를 위해 **파트너십 과세제도*** **도입**

*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파트너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로서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해소

** 외국의 도입사례 :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호주, 캐나다 등

3.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

① 비과세·감면제도의 정비

○ **'07년 일몰도래**되는 **비과세·감면제도 18개**(2.7조원, 전체 감면액 21.2조원의 12.7%)중 6월말 일몰인 농어업용 유류세 면제(1.6조원)는 4월 임시국회에서 농어민 지원을 위해 5년 연장

○ 나머지 17개 제도에 대해서는 8건을 폐지(일몰종료)하고, 1건을 축소, 8건을 연장 예정

②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폐지

○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**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되는 최저금액기준을 폐지**

③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

○ 금년에 일몰도래하는 **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년 연장**하고 **공제율 구조 개편***

* (현행)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15% 공제
(개정) 총급여액의 20%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% 공제

4.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

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

○ 전국 231개 기초지자체를 **4등급으로 구분**한 후 **70%, 50%, 30%, 0%의 감면율을 중소기업에 적용**

○ 대기업의 경우 **사업장 지방이전**에 대해 **10년간 등급별 감면율 100%, 그후 5년간 50%** 적용하고 **지방사업장 신설의 경우에는 7년간 등급별 감면율 100%, 그후 3년간 50%** 적용

* 현 행 : 수도권과밀억제권→수도권외로 이전시 5년 100%, 2년 50% 감면

② 한·미FTA 후속조치 추진

○ 2,000cc초과 **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을 협정 발효시 8%로 인하**하고, 3년간 **매년 1%p씩 단계적 인하**(10% → 5%)

5. 조세제도의 선진화

①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

○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종합부동산세 등 개인이 납부하는 세목에 대해 **200만원** 한도까지 카드납부를 허용하여 **납세자의 편의 제고**

* 대상세목·납부한도는 제도 시행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

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

○ **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**를 **확대**하고 (현행 소득의 10% → 20%)

○ **국민신탁(National Trust) 또는 박물관·미술관**에 **현물로 기부**하는 경우 **특례기부금**(소득의 50%한도)으로 **인정**

③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

○ 모든 공익법인(종교법인은 제외)에 대해 **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을 의무화***

*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범위
- 기부·출연금, 인건비, 임차료, 고유목적 사업비(100만원 초과분)

○ **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및 세무확인 제도의 내실화**

-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**기부금 모집 및 지출, 자산현황 및 변동내역** 등을 **공시**

*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,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(자산총액의 0.5%)

④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

○ **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***에 대해 **동일기업 주식출연 취득제한** (발행주식 총수의 5%→20%) 및 **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도 완화** (총자산가액의 30%→50%)

* 전용계좌 개설, 결산서 등 공시이행, 외부감사 수감, 매년 운용소득의 90%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

⑤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

○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,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 **3억원**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**6억원으로 상향조정**

⑥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

○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보유년수에 비례하여 3년이상 보유시 매년 양도차익의 3%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

* 현행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방식
3~5년 : 10%, 5~10년 : 15%, 10~15년 : 30%, 15년이상 : 45% 공제